

안 전 기 준

접촉성 금속 장신구

부속서 22

(Metal Jewelry in contact with skin)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pendant),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 플라스틱,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한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함량이 58.5%이상), 은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853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함량시험방법 (교체노출법)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3. 안전 요건

3.1 결모양 연마가 되어있지 않거나 갈다 남은 곳이 눈에 띄이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연마되어야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끝처리는 없어야 한다.

3.2 유해원소

3.2.1 니켈 용출량 니켈 용출량이 $0.5 \mu\text{g}/\text{cm}^2/\text{week}$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방법

4.1 결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4.2 유해원소

4.2.1 니켈 용출량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A**를 따른다.

5. 표시사항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등으로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1. 사용연령 : 14세 이상
2. 제조연월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686호(2015.12.30)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3호(2017. 2. 8)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